
HJ중공업 협력사 행동규범

2023. 10



건설부문

목 차

1. 개요

- 가. 행동규범 목적
- 나. 행동규범 대상
- 다. 행동규범 준수

2. 윤리

-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 나. 이해상충 방지
- 다. 불공정 거래 방지
- 라. 위조부품 방지
- 마. 정보보호

3. 안전/보건

-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 나. 안전보건 관리기준 준수
- 다. 비상상황 대응
- 라. 사고 관리
- 마. 근로자의 적격성 확인
- 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 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유해·위험물질 관리
- 아.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관리

4. 환경

- 가. 환경법규 준수
- 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다. 환경관리

5. 노동/인권

- 가. 차별 금지
- 나. 임금 및 복리후생
- 다. 근로시간 관리
- 라. 인도적 대우
- 마. 결사의 자유 보장
- 바. 아동노동 금지
- 사. 강제노동 금지

6. 경영시스템

- 가. 규범 준수
- 나. 리스크 관리
- 다. 고충처리 제도 운영
- 라.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1. 개요

가. 행동규범 목적

HJ중공업은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원칙을 인식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J중공업은 모든 협력사가 기업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갖추어 성장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성장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행동규범 대상

본 행동규범은 HJ중공업과 일체의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다. 행동규범 준수

본 행동규범은 윤리, 안전/보건, 환경, 노동/인권, 경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 또는 당사에서 지정한 외부 기관이 협력사 행동규범의 준수 여부 점검 및 실사를 위해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가. 투명경영 및 반부패

- ① 협력사는 국내·외 부패 방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 추구 목적으로 당사 임직원을 회유하기 위한 뇌물공여나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당사 임직원의 불법·부당 행위 요구가 있을 시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나. 이해상충 방지

- ① 협력사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받는 행위 등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불공정 거래 방지

- ①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사는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 위조부품 방지

- ①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자재 등을 생산, 가공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을 사용,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자재 등이 생산 또는 사용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경우 정부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자재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정보보호

- ① 협력사는 당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당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당사 및 거래업체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 ① 협력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 관리기준 준수

- ① 협력사는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당사의 안전보건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작업 전 교육 및 지도해야 합니다.

다. 비상상황 대응

- ①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비상 연락체계, 부상자 응급처치 요령, 구조장비 사용 등에 대하여 임직원에게 주기적으로 모의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사고 관리

- ①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 근로자의 적격성 확인

- ① 협력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작업 공종별 주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관리 대책을 이행하기에 적합한 근로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작업장소, 위치, 시간,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 등의 위험을 확인하고 근로자의 연령,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작업에 배치해야 합니다.

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 관리

- ①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유해·위험물질 관리

- ① 협력사는 임직원 모두 자유롭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또는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 및 운영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화재, 폭발 또는 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및 건강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물리적 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 작업환경 개선 및 보건관리

- ① 협력사는 근로자가 신규로 투입될 경우 근로자 혈압 및 기초체력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근로자 개인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여 개인 질병 보유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근로자 작업환경 및 휴게공간에 있어서 위생상태를 수시 점검하며, 밀폐공간/분진/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 취급 작업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 시간 단축, 작업 전환 등의 관리를 해야 합니다.
- ④ 협력사는 사업장 내 작업 특성, 작업자 특성, 작업 장소 등 작업환경 특성 및 기후적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환경

가. 환경법규 준수

- ① 협력사는 환경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① 협력사는 환경경영방침과 환경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방침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자원 절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다. 환경관리

- ① 협력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의 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생활 소음 및 생활 진동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건설폐기물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노력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④ 협력사는 폐수 및 오수가 발생할 경우,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최소화하여 방류해야 합니다.
- ⑤ 협력사는 토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오염된 토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⑥ 협력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통해 일반화학물질 유출,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⑦ 협력사는 작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수자원 등을 절감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노동/인권

가. 차별 금지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있어서 성별, 인종, 종교,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임금 및 복리후생

- ① 협력사는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며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 근로시간 관리

- ① 협력사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 인도적 대우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협력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마. 결사의 자유 보장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

바. 아동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 강제노동 금지

- ① 협력사는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③ 협력사는 신체적/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가. 규범 준수

-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며, 본 행동규범에서 다루는 사항들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및 행동규범에 명시된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나. 리스크 관리

- 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과 관련한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과 관련하여 담당자 및 관리자를 선임하고, 본 행동규범 전 분야에 대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 고충처리 제도 운영

- ① 협력사는 임직원이 본 행동규범과 관련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라. 거래업체(하위 협력사) 관리

- ①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윤리, 안전/보건, 환경, 노동/인권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 ② 협력사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가 윤리, 안전/보건, 환경, 노동/인권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